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

(제정 2007.7.1., 최종개정 2023.4.1.)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우리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개발 활동(학위논문연구 포함)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, 연구원, 학생 등에 대해 적용한다.(변경 2012.4.1.)
- 제3조(적용범위)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4조(용어의 정의) ①연구부정행위(이하 "부정행위 "라 한다)라 함은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위조 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 - 2.변조 :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 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 - 3.표절: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(변경 2016.1.1.)
 - 가.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
 - 나.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·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
 - 다.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
 - 라.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
 - 4.부당한 저자 표시 :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 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(변경 2016.1.1.)
 - 가.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.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
 - 다.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· 발표하는 경우
 - 5.부당한 중복게재 :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(호 신설 2016.1.1.)

- 6.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7.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- 8.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(변경 2016. 1.1.)
-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자를 말한다.
-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- ⑤보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-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,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제4조의2(연구자의 역할과 책임)(조 신설 2016.1.1.)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
 - 2.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
 - 3.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
 - 4.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
 - 5.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
 - 6.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 정·존중
 - 7.연구계약의 체결,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
 - 8.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 명시
 - 9.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(호신설 2019.12.1.)
 - 10.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(호번호 변경 2019.12.1.)
 - 11.연구자는 다음 가목의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때 나~라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.(신설 2022.5.1.)
 - 가.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인 자) 또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)을 말한다.
 - 나. 연구시작 전 :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 - 다. 연구수행 중 :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,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라. 공저논문 발표 전 :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.

제 2 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

- 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학술연구진흥위원회위원장, 대학원장, 교육지원처장, 산학협력단장(이하 "당연직 위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변경 2014.5.1.,2016.5.1.) 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장) ①위원장은 학술연구위원회위원장이 되고, 회의를 통할한다.(변경 2016.5.1.)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교육지원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
- 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연구윤리·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- 3.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(호 신설 2016.1.1.)
 - 4.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 - 5.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- 6.판정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
 - 7.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 - 8.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- 9.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에 관한 사항(변경 2023.4.1.)
 - 10.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(호 신설 2023.4.1.)
- 제8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 -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9조(전문위원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,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제10조(관계자 출석)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**제11조(주관 등)** 회의는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며, 간사는 학술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.(변경 2014.5.1., 2014.12.22.)

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

제12조(부정행위 등의 제보·접수) ①제보자는 학술연구지원팀(학위 논문의 경우 대학원 교학팀) 에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(변경 2014.5.1., 2014.

12.22.)

- ②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(삭제 2011.9.1.)
- 제13조(예비조사의 기간·방법)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예비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, 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 - 1.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.(삭제 2011.9.1)
 - ③예비조사는 학술연구지원팀(학위 논문의 경우 대학원 교학처)에서 담당하되,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(변경 2014.5.1., 2014.12.22)
- 제14조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얻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 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제보내용
 - 2.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
 - 3.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 - 4.기타 관련 증거자료
- 제15조(본조사 착수기간)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 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 -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,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조사위원회 구성)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변경 2011.9.1.)
 - ②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(변경 2011.9.1., 2016.1.1.)
 - 1.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함
 - 2.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% 이상으로 하되,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 -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조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제보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교직

워으로 한다.

- ⑤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⑥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출석·자료제출 요구)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 및 참고인에게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출석통지서를 통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(변경 2012.4.1.)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,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·보관 등을할 수 있다.
- 제18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·비밀엄수)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 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 -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 -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다.
 - ④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,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- 제19조(이의제기·변론의 권리 보장)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,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.
- 제20조(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 보고서(이하 "최종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.
 -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제보내용
 - 2.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
 - 3.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
 - 4.관련 증거 및 증인
 - 5.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 - 6.조사위원 명단
- 제21조(판정) ①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은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

하고,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
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2조(이의신청·재심의)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(교비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)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외부지원 연구과제는 해당기관의 절차에 의하고, 교비지원 연구과제는 위원회에서 이의제 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며, 재심절차는 본조사를 준용한다.

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

- 제23조(연구지원기관에 대한 제출)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(변경 2023.4.1.)
 -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
 - 2.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 - 3.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제24조(결과에 대한 조치)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 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 - ②총장은 징계요청 및 제재조치를 결정하고, 해당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.(변경 2012.4.1)
 - ③징계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.
- 제25조(기록의 보관·공개)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술연구지원팀에서 보관하며,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(변경 2014.5.1., 2014.12.22.)
 -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, 제보자·조사위원·증인·참고인·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5 장 보 칙

- 제26조(경비)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7조(준용)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법령을 준용 한다.

제28조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따로 정한다.

| | 부 | 칙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
|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н | 1 |
|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 | 칙 |
| | 부 | 칙 |
|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 | 칙 |
|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| -1 |
|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 | 칙 |
| | 부 | 칙 |
|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 | 칙 |
|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| | |
|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 | 칙 |
| | 부 | 칙 |
|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 | 칙 |
|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· | • |
|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 | 칙 |
| | 부 | 칙 |
|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| |

[별지 제1호 서식] (신설 2012.4.1)

| 출 석 통 지 서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|--|--------|---|--|--|
| 인적사항 | 성 명 | | 소 속 | | | |
| | 직 위(급) | | 주민등록번호 | _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
| 출석이유 | | | | | | |
| 출석일시 | | | | | | |
| 출석장소 | | | | | | |
| 유의사항 | 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 개최시기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명지대학교 『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』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명지대학교 연구진실성검증 조사위원회 위원장 (인)

귀하

| 진 술 권 포 기 서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|--|--------|---|--|--|--|
| | 성 명 | | 소 속 | | | | |
| 인적사항 | 직 위(급) | | 주민등록번호 | - |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 |

본인은 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(인)

명지대학교 연구진실성검증 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